

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74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9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안광석 의원이 2021년 8월 6일 대표발의하고 정진술 의원이 2021년 8월 9일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총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,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18세 미만의 아동을 규정함(안 제9조제5호).

나. 여가교육이 가능한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규정함(안 제10조제4호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호 중 “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말한다)”를 “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, 다문화 가정 및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한다)로 한다.

제10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

4.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소년 시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여가 활성화 사업) (생략)	제9조(여가 활성화 사업)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말한다)의 여가활동 지원</u>	5. <u>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, 다문화 가정 및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한다)---</u>
6. ~ 7. (생략)	6. ~ 7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여가교육의 실시) ① (생략)	제10조(여가교육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4.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<u>청소년 시설</u>
<u>4.</u> (생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